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6월 25일(화) 브리핑 시작(11: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6. 24. / (총 31매)			
장애 인정 책 과	과 담 당 자	장 담 당 자	권 정 순 길	044-202-3280 044-202-3288 044-202-3285
장애인 권익 지원 과	과 담 당 자	장 담 당 자	신 용 호	044-202-3310 044-202-3307
장애인 자립기 반 과	과 담 당 자	장 담 당 자	김 승 일	044-202-3320 044-202-3328
장애인 서비스 과	과 담 당 자	장 담 당 자	성 재 경	044-202-3340 044-202-3344 044-202-3341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 (서비스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월~, 6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월~, 11차)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방향을 모색해왔다.
-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중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중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 중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²⁾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³⁾**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 1) (현행)1·2급 30%, 3·4급 20%, 5·6급 10%→(변경)중증 30%, 경증 20%
- 2) (현행)1·2급 30%→(변경)중증 30%
-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현행)대상자 200명당 1대, 3,179대 → (변경)150명당 1대, 4,593대(45% 증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¹⁾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²⁾**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1) '19.7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 (개선) 중증 지체·뇌병변 '19.10월,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3년)
- 2) ('18) 28개 → ('19) 30개(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 ('22) 36개 예정

-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확대 지자체 서비스 예시 >

지자체 서비스	현행	변경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1·2급	중증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1급	중증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1·2급	중증

○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 예시 : 1~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6급 장애인 → 등록 장애인

②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 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 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단위: 시간) >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현행	120.56	167.35	145.50	116.33	99.29	95.36
변경(추정)	127.70	175.48	154.00	122.66	104.50	107.68

* 월평균 지원시간: (현행) 120시간 → (변경) 127시간+α(서비스 감소자 보호조치)

-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 월최대 지원시간: (현행) 441시간(일14.7시간) → (변경) 480시간(일16.0시간)

-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 (현행) 32만2900원 → (변경) 15만8900원(-16만4000원)

-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 (예) 시각장애인이 옷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옷의 청결상태, 색상과 무늬, 앞·뒤를 구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적정하게 고려·평가

-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 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관련내용을 명문화

③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 사례관리 모형은 시군구별 기존 사례관리 담당기관(부서), 공공-민간의 사례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예시)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기존 민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민관자원(장애인복지관) 활용,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활용 등

-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 장애인복지관 인력기준 변경을 위한 지침 개정('19.6), 시행규칙 개정('19.하)



□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사회연구원)

** (참고)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 활동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하여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주요내용 요약
 2. 달라지는 모습(가상사례)
 3.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4.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5. 중앙부처 장애인 서비스 목록(141개)
 6. 장애계 의견수렴 및 논의 경과
 7.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개요
 8. 주요 Q&A

붙임 1 주요내용 요약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구축			
영역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담체계 강화
세부 내용	- 장애등급→장애정도로 개편 - 장애등급 폐지 - 1~6급 폐지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 구축 -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서비스 이력관리 제도 확대 - 찾아가는 상담, 전문기관과 동행상담 강화 -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취지	의학적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 탈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가구환경 등 보다 세밀한 고려	지원 필요 장애인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효과	-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급→중증 등) -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확대 - (예) 인천시 동구 유료방송이용요금 (1급→중증) - 장애등급제 폐지 고려한 관련 복지제도 개선 - (예) 장애인보장구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평균지원 시간 확대, 이용자 확대 * (월평균) 120시간→127시간+a (월최대) 441시간→480시간 - 본인부담금 인하 * (최고금액) 32만원→16만원	- 물려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서비스 탈락 후 소득·가구 구성 등 상황 변동 시 행복 e음을 통해 자동 확인하여 재신청 안내 -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격적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 및 연계
향후 방향	새로운 지원체계 위에 장애인 복지 단계적 확충		
	복지·보건 분야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공공후견,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화장실개선	주거·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보조기기 지원품목확대, 스마트홈, 주택개보수	소득·고용 분야 기초생활보장급여 특례, 자립정착금, 맞춤형 취업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붙임 2 달라지는 모습 (가상사례)

1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사례1) 활동지원 지원시간 확대('19.7월)

현 재	개 선
■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동시에 있는 최중증의 1급 장애인 A씨는 현재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받음	■ 최중증 장애를 두텁게 보호하고 중복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조사에 따라서 하루 16시간 지원시간이 인정됨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

현 재	개 선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

현 재	개 선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 (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2 기준 확대 및 장애인 전달체계 구축

○ (사례4) 감면·할인 확대

현 재	개 선
■ 근로자인 지적장애 3급인 D씨는 건강보험료(4만 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7천 원)를 납부하고 있는데, 건보료는 20% 감면을 받음(-8천 원)	■ 건보료 감면율이 인상되고(중증30%), 장기요양보험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1·2급→중증), 건보료 30% 및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을 받음(-15천 원)

○ (사례5)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현 재	개 선
■ 최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L씨는 시력이 안좋아 지역사회 활동이 많이 어렵지만 어디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몰라 지원을 못 받음	■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사가 동행해 L씨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건강보험 보장구(저시력확대기), 장애인복지관의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 (사례6) 누락서비스 발굴(수급희망 이력관리)

현 재	개 선
■ 한부모가정의 자폐성 장애아동 K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친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	■ 활동지원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여부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되어 가족의 직장생활에 따른 지원시간(월 73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음

붙임 3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연번	기관	서비스	현행 기준	기준 개편(안)
계	12개 부처청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전체 장애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시간 대폭 확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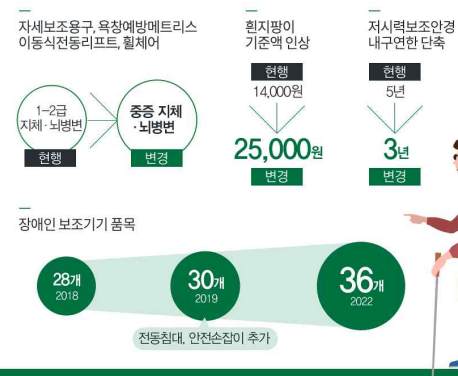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현행)대상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기관	서비스	현행 기준	기준 개편(인)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 /전체 장애인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감	상한 322,900원	상한 158,900원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의료분쟁조정 기관개시	1급	중증장애인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의사·약사 중재	1~2급	중증장애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차량당 200명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장애, 차량당 150명당 1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용상 등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장애인
행정안전부	점자주인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증 장애	중증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창업 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고령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붙임 4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붙임 5

중앙부처 장애인 서비스 목록[141개]

1 일괄지원 서비스[61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기준
1	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2	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	복지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4	복지부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5	복지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6	복지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등록 장애
7	복지부	장애검사비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8	복지부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등록 장애인
9	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0	복지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록 장애인
11	복지부	언어발달지원	한쪽 부모가 등록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소득기준)
12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아동(소득기준)
13	복지부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등록 장애인
14	복지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소득기준)
15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16	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17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연령기준)
18	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19	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0	복지부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1	복지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2	복지부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23	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 장애인
24	복지부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5	복지부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 장애인
26	복지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7	복지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8	복지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장애인
29	복지부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단체
30	복지부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31	복지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32	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33	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및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34	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록 장애인
35	교육부	특수학급보조인력배치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6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37	문화부	문화바우처 사업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8	농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록 장애인(소득기준)
39	과기부	사랑의그린pc 보급	등록 장애인
40	산업부	승용자동차 LPG사용허용	등록 장애인
41	국토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	등록 장애인
42	고용부	장애인 근로자 용자사업	등록 장애인
43	고용부	장애인 창업자금 용자사업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4	고용부	취업알선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5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46	특허청	특허출원료 등 감면	등록 장애인
47	관세청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 장애인
48	국세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록 장애인
49	국세청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 장애인
50	국세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 장애인
51	국세청	상속세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및 동거가족
52	국세청	증여세 면제	등록 장애인
53	국세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 장애인
54	방통위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청각 장애인
55	방통위	장애인 방송 시청지원	시청각 장애인
5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등록 장애인
57	한국방송공사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5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록 장애인 또는 보호자
59	통신사(지자체 신청)	이동통신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0	통신사(지자체 신청)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61	통신사(지자체 신청)	유선전화 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② 등급별 차등지원 서비스(80개)

① 기준 확대 사업(23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② 별도기준 활용(38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비 면제	1~4급 면제 5~6급 30% 부과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	복지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3	복지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4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면제	1~3급 (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5	복지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6	복지부	보행상장애인 주차차 단속배려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7	복지부	장애인연금	1~2급, 3급중복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8	복지부	장애수당	3급(중복제외),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9	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중증) 1~2급, 3급중복 (경증) 3급,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0	복지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3급 중 인정조사 일정점수 이상	종합조사
11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급, 3급 일부 유형	종합조사
12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급	종합조사
13	복지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4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5	고용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6	고용부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7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8	고용부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9	고용부	편의시설 설치·구입비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0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1	고용부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2	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3	고용부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4	고용부	장애인고용 인원산정 특례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5	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6	보훈처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7	보훈처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8	병무청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병역) 면제	(8개 유형)면제 (7개 유형) 1~3급 면제, 4~6급 일부면제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9	병무청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1~3급신체장애 1~2급정신장애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1	병무청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1~2급면제, 3급이하 제2국민역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2	인사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공단에서 심사 및 결과제공)
33	인사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4	인사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 4급2호 중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5	행안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급 (조례:시각4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6	선관위	활동보조인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공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7	선관위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8	선관위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③ 단순 용어 정비(19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기재부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2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3급인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4~6급 지원	중증 장애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경증 장애학생 지원
3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3급 장애인 우선	중증장애인 우선
4	법무부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1~3급	중증장애인
5	행안부	1가구1주택 적용예외 (취득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6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7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8	고용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예외	3급 이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 활용
9	국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중증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10	인사처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청각장애 2~3급	청각중증장애인
11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3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순위: 신규참여1~3급 2순위: 1~3급	1순위: 신규참여중증 2순위: 중증장애인
14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급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15	교통안전 공단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급:50%할인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16	한국가스 공사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감감	1~3급	중증장애인
17	한국전력 공사	전기요금 감면	1~3급	중증장애인
18	철도공사 등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30%할인
19	지역난방 공사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1~3급	중증장애인

붙임 6

장애계 의견수렴 및 논의 경과

1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 (구성)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장애인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장애계(4명), 전문가(5명), 복지부(2명)의 11명으로 구성
- (장애계) 박경석 대표(전장연), 김동범 사무총장(장총), 서인환 사무총장(장총연), 김기룡 사무총장(부모연대)
- (전문가) 조한진 교수(대구대), 우주형 교수(나사렛대), 정지웅 교수(배재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최복천 교수(전주대)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과장
- (운영) 11차 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논의

회차	날짜	논의 안건
1차	'17. 10. 20.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계획
2차	'17. 11. 03.	▪ 감면·할인 서비스 기준 검토
3차	'17. 12. 01.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로드맵 ▪ 위원별 논의필요사항
4차	'17. 12. 15.	▪ 주요 서비스 기준 논의
5차	'18. 01. 12.	▪ 고용·소득 서비스 기준 논의
6차	'18. 01. 26.	▪ 종합조사도구 개요 ▪ 경증장애 중복합산 검토
7차	'18. 03. 23.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
8차	'18. 04. 27.	▪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 결과
9차	'18. 05. 16.	▪ 종합조사도구 관련 세부사항
10차	'18. 07. 06.	▪ 종합조사도구 관련 세부사항 ▪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11차	'19. 06. 05.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현황 및 계획 ▪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2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경과(2013~2019년)

< 2013년 >

- '13.04.15~12.16 :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

회의일자	참여 단체	회차
04. 15.	장총, 장총연, 전장연, AP-DPO United	1차
05. 10.	장총, 장총연, 전장연	2차
06. 21.	장총연, 한시련, 전장연, AP-DPO United	3차
07. 26.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전장연	4차
09. 03.	장총연, 한시련, 전장연, AP-DPO United	5차
12. 16.	장총, 장총연, 전장연, 지장협, 한시련	6차

< 2014년 >

- '14.04.04~07.11: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 회의

회의일자	참여 단체	회차
04. 04.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1차 총괄
04. 25.	장총, 지장협, 한시련	3차 분과
05. 23.	장총, 지장협, 복지관협회	4차 분과
06. 13.	한시련, 지장협, 복지관협회	5차 분과
07. 11.	한시련, 지장협, 복지관협회	6차 분과

- '14.08.21 : 장애등급제 폐지 토론회(전장연)
- '14.10.02/08 : 장애인단체 단체장 및 사무총장 설명회
- '14.10.28/11.5 :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단체 공청회
 - 34개 장애유형 당사자 단체 대상
- 14.12.01~12.30 : 장애인 단체 그룹별 간담회(26개 단체)

회의일자	구분	참여 단체
12. 10.	장총연계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12. 17.	장총계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12. 23.	인권분야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2. 24.	시설분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의지보조기협회
12. 29.	특수유형 단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해남복지회
12. 30.	현안단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2015년 >

- '15.03.10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지장협, 장총연)
- '15.03.17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전장연)
- '15.04.09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 면담
- '15.04.14 :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장관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장총, 장총연, 한시련, 지장협,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발달장애인지원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5.05.20 / 06.04: 장애등급제 개편 및 시범사업 관련 장애인단체 설명회

회의일자	참여 단체
05. 20.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농아인협회, 전장연
06. 04.	장애인인권포럼, 신체장애인지원회, 장루장애인지원회, 여성장애인지원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연맹, 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의지보조기협회, 뇌변환장애인지원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성마비협회, 신장장애인협회, 해남복지회 등

< 2016년 >

- '16.04.29. : 장애인정책협의체 4차회의(등급제 개편 설명)
 - 장총, 장총연, 지장협, 한시련,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6.06.14~06.17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관련 장애인단체 설명회

회의일자	참여 단체
06.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6. 14.	한국지체발달장애인지원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6. 16.	한국여성장애인지원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뇌병변장애인지원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지원회,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 '16.06.29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5차 회의(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협의)
 - 장총, 지장협, 농아인협회, 한시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16.07.12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설명(전장연)
- '16.07.12 : 장애인복지관 협회 간담회
- '16.08.31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6차 회의(등급제 개편방향 설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16.12.26 : 장애인정책협의체 제7차 회의(등급제 개편 관련 설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17년 >

- '17.01.13 : 중앙 장애인단체 사업설명회(장총, 장총연, 지·농·맹)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방향, 3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설명
- '17.01.24 : 전국 장애인단체 사업설명회(33개 단체 및 전장연)
 -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방향, 3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설명
- '17.03.24 : 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복지관협회 교육 강의
- '17.04.27 / 05.25 / 08.17 : 장애인단체 간담회(전장연)
- '17.08.25 : 복지부장관 광화문 천막농성장 방문(전장연 등)
- '17.09.14 : 등급제 폐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담회
- '17.10.20 ~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 장총, 장총연, 전장연, 부모연대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차
10. 20.	-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1차
11. 03.	- 감면·할인서비스 기준	2차
12. 01.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로드맵	3차
12. 15.	- 주요 서비스 기준 개편	4차

- '17.11.15 :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 관련 장애인 단체 간담회
 - 장충, 장충연, 전장연, 부모연대
- '17.12.05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2018년 >

- '18.01.12 ~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차
01. 12.	- 고용·서비스 기준	5차
01. 16.	- 종합조사도구 개요 / 경증장애 합산방안	6차
03. 23.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 / - 종합조사 적용사례	7차
04. 27.	- 종합조사 모의적용 결과	8차
05. 16.	- 종합조사 관련 세부사항	9차
07. 06.	- 종합조사 관련 세부사항(향후 운영방안)	10차

- '18.02.20 : 복지부차관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단
- '18.03.05 :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18.03.29 : 등급제 폐지 관련 2018년 상반기 장애인단체 실무연수 강의
- '18.04.18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 (1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2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8.06.14 : 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인연합회 간담회
- '18.06.21 : 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심화재활교육 강의
- '18.06.26 : 등급제 폐지 관련 전국수어통역센터장 교육 강의
- 전체 30개 장애인단체 참여 토론회 개최('18.9.3)

< 2019년 >

- 복지부차관 주재 장애계 신년인사회('19.1.8)
- 복지부장관 주재 장애인단체장 간담회('19.4.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면담(2차례, '19.4.11, 5.2)
- 복지부장관 주재 전장연 등 인권단체 간담회('19.4.1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 전체 26개 장애인단체 참여 토론회 개최('19.4.1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각장애인연합회 긴급이사회 참석('19.5.16)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 면담('19.5.28)
- 사회복지정책실장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면담('19.5.29)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1차 회의('19.6.5)
-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충 및 장충연 회장 면담('19.6.10)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면담('19.6.10)
-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 참석을 통한 의견수렴 및 소통 추진

붙임 7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개요

1 구성

-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 20개 부처·청 소관국장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 (공동간사)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

2 운영

회차	날짜	논의사항
1차	'18. 05. 03.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 기준 개편 검토
2차	'19. 01. 18.	▪ 서비스 기준 변경 및 법령 정비(복지부 사업부서)
3차	'19. 01. 24	▪ 서비스 기준 변경 및 법령 정비(관계부처 사업부서)
4차	'19. 04. 22.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준비 추진현황 및 부처협조사항
5차	'18. 05. 27.	▪ 시행준비상황 1차 점검(보건복지부장관 주재)
6차	'18. 06. 07.	▪ 시행준비상황 2차 점검(보건복지부장관 주재)

붙임 8 주요 Q&A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7.1일 이후 다시 판정을
Q1.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6.4 공포, 7.1 시행) 부칙 제2조

** 다만, 종전 장애등급 판정 시에 재판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그리고 종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기됩니다.

Q2. 종합조사표에 대해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 ☐ 종합조사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바탕을 둔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13년 이후 7회 관련연구, 3차례 시범사업, 장애계·전문가 등의 지속적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러한 목적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표준적·객관적 평가지표**로 구성되고, 장애인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별 가중치가 검토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에 장애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애계 의견, 제도운영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1년 이내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러한 검토과정을 매 3년마다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관련내용을 명문화

Q3.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에 의해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무엇인지?

- ☐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감소 또는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도 급격한 급여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즉,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 갱신조사 결과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번 갱신조사 전까지(3년간)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 다만,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가 조정
- ☐ 아울러 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므로,
- 장애계 요구사항, 제도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경과조치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Q4.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상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행복e음** 화면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신청 가능한 서비스 목록이 자동으로 정렬됨(총 115종 서비스)

상세 설명

장애인 심사원료자 - 맞춤형 안내서 출력

1. 정도결정서 및 자료보완서 출력 버튼 클릭 시 대상자의 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목록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조회
2. '장애인복지서비스안내서' 항목이 기본 체크되며 체크를 해제하여 안내서 출력여부를 선택 가능
3. 조회된 서비스 목록의 안내서를 개별로 체크하여 출력여부를 선택 가능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e그린우편 출력' 화면 팝업

※ 장애인 맞춤형안내 대상서비스: 총 115종(2019.05기준)

- 해당 서비스 목록이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으로 출력되거나 또는 'e그린우편'으로 자동 발송됨

상세 설명

장애인 맞춤형 안내서 출력(e그린우편)

1. 대상자의 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이 출력화면에 조회
2. 서비스 안내문 체크 및 해제를 통한 출력여부가 적용
3. '지방자치단체 제공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hwp'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pdf 또는 hwp 파일로 저장한 후 지자체 서비스안내문을 포함하여 발송